

제190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 례 2 건)

의 회 운 영 위 원 회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3 ~ 13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3 ~ 14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13
----------	---------

제출일자	2013. 03. 05.
제 출 자	이애숙강철우강창남김재관이성복

1. 제안이유

○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다음연도 본예산 심의,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함에 따라 의안심의 업무량이 편중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의안심의 업무량의 편중을 해소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를 위한 예산이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을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1) 「지방자치법」 제41조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집행부의견조회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2013. 3. 8 ~ 3. 14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을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감사는 <u>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u> 9일 이내로 실시하되, 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p> <p>③ ~ ⑤ (생 략)</p>	<p>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u> -----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

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14
----------	---------

제출일자	2013. 03. 05.
제 출 자	이애숙강철우강창남김재관이성복

1. 제안이유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2012. 12. 26)에 의해 사업소명이 변경됨에 따라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의 사업소명을 개정된 사업소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소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 교육문화센터 ⇒ 문화센터(안 제3조제2항제2호)
 - 시설관리사업소 ⇒ 체육청소년사업소(안 제3조제2항제2호)
 - 거창사건관리사업소 ⇒ 거창사건사업소(안 제3조제2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62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집행부의견조회 : 해당없음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2013. 3. 8 ~ 3. 14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교육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거창사건사업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총무위원회 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u>교육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u>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u>거창</u> <u>사건관리사업소</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 <u>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u> ----- 3. ----- 가. ----- ----- ----- <u>거창</u> <u>사건사업소</u> -----</p>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